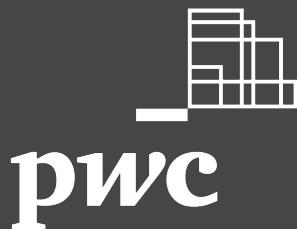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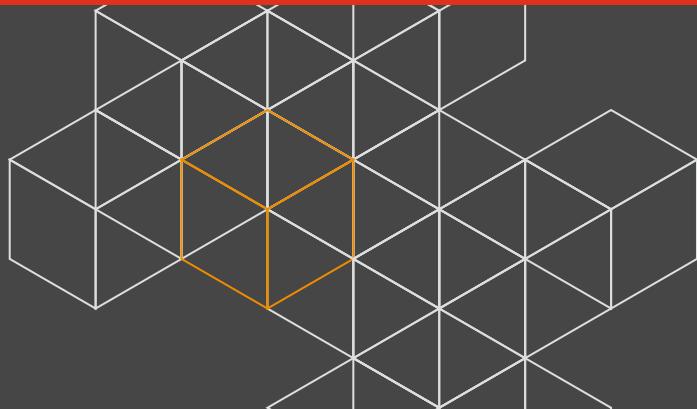


PwC 베트남 뉴스레터

베트남 현지 수출입 통관절차를
제한하는 제안에 대한 업데이트



www.pwc.com/vn



At a glance..

본 뉴스레터는 6월 9일 발행된 이전 [뉴스레터](#)에서 다뤘던 내용에 관한 업데이트입니다. 8월 25일 재무부는 시행령 08 제 35조에 규정된 현지 수출입 절차 폐지에 대한 제안서를 정부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재무부는 또한 그러한 절차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대안/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세부 사항

제안의 일부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시행령 08을 개정하여 특정 현지 수출입 절차의 수행을 제한하는 시행령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2015년 1월 21일자 정부의 시행령 08/2015/NĐ-CP 제35조 폐지.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해외 조직 또는 개인 간의 매매거래로, 베트남에 소재하는 다른 기업에(서) 재화가 직접 인도 또는 수령되도록 안내되는 경우, 동 시행령 발효일로부터 최대 1년 기간동안 현지 수출입 통관절차를 계속 수행할 있습니다. 다만, 해외무역관리법 제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 무역업자가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시행령 발효일로부터 1년의 전환 기간동안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무역업자가 참여하는 삼자간 거래는 계속해서 현지 수출입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활용할 만한 유예이지만 현지 수출입 절차는 오직 무역업자가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해당 이슈에 대한 8월 17일자 [뉴스레터](#) 참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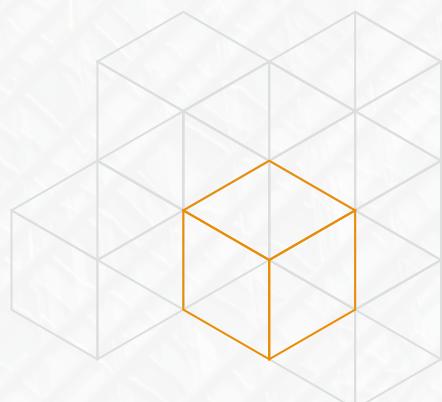
세부 사항

(ii) 현지 수출입 절차는 여전히 임가공 활동 및 국내기업과 수출가공기업 간의 매매거래에 수행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러한 경우 관련 관세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iii) 재무부는 현지 수출입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특정 대안/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예: 보세창고 활용, 비수출가공기업에서 수출가공기업으로 전환). 그렇지 않으면 해당 거래는 국내 매매거래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국내 기업 간의 매매거래로 수행될 경우,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 VAT 누출 및 재화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에 부과될 추가 수입관세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분명히 이상적이지 않으며 실제로 여러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당국은 재무부의 제안을 검토하는 사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제안된 대안을 검토하며 영업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공급망 구조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추가적인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관세 전문가에게 연락주십시오.



Contact us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ichard Irwin

Partner
+84 903 037 751
r.j.irwin@pwc.com



박준형 – 호치민 사무실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8) 3823 0796 Ext. 4611
park.junhyung@pw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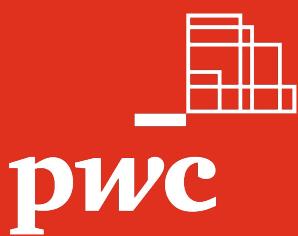
Nguyen Huong Giang

Partner
+84 979 001 783
n.huong.giang@pwc.com



우정균 – 하노이 사무실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4) 3946 2246 Ext. 1011
jung.kyun.woo@pwc.com



www.pwc.com/vn

